

##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15일
------	-----	-----	------	-----

신고인	상호	설립일		년	월	일
	사업자등록번호	법인등록번호				
	대표자의 성명	성별	생년월일			
	주소					
	우편물 수령지					
	전화번호			FAX번호		
	홈페이지			E-mail주소		

신고인 현황	신고인 유형	[ ]대기업	[ ]중소기업	[ ]공공기관	[ ]기타
	사업 내용 및 주요 활동	1)	2)	3)	

신고사항	엔지니어링업	기술부문	등	개	부문	전문분야	등	개	분야
	엔지니어링 컨설팅업	기술부문	등	개	부문	전문분야	등	개	분야

### 총 종업원 수

구분		기술사	기사	산업기사	학력자(자격증 미소지자)	계
엔지니어링 인력	박사	명	명	명	명	명
	석사	명	명	명	명	명
	학사	명	명	명	명	명
	전문학사	명	명	명	명	명
	고졸	명	명	명	명	명
	소계					
관리인력 (관리직 등 지원인력)		명	명	명	명	명
기타 인력 (시공 등 엔지니어링 외 기술자)		명	명	명	명	명
계		명	명	명	명	명

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협회장 귀하

첨부서류	1.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법인만 제출합니다) 2. 사업자등록증 3.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33조 및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제15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말합니다) 1부 4.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배치표 5.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)	수수료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2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협회가 정한 금액
------	---	--

### 작성방법

1. 신고사항의 "엔지니어링업" 및 "엔지니어링컨설팅업"란은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」 제3조 및 별표 1 "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"에 따라 적습니다.
2. 신고인이란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, 개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3.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,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.
4.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 받게 됩니다.

###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협회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### 처리절차

